

## 교육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위해 기구·정원 기준 마련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준의 위상과 행정 수요를 반영한 부교육감 직급 정비
- 기획조정실장 신설, 실·국 체제 확대(7실·국)로 통합 교육행정 수요 선제 대응
- 통합업무를 전담할 3급 상당 과장·담당관 확대로 조직 통합역량 강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29일(금)부터 6월 5일(금)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의 교육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 지역의 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자, 조직의 위상과 실무역량을 대폭 보강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① 통합특별시교육청의 특수성과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실·국 설치 기준 특례 마련

통합특별시교육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구 설치 특례가 마련된다. 특별법에 따라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 수준으로 확대하되, 양 교육청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교육 특성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을 계승하기 위해 2개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총 7개의 실·국 운영이 가능해진다. 2개국 추가 설치 특례는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단계적 조직 통합을 통해 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통합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 본청 실·국 설치 기준 : 서울 3~5개, 경기 4~6개, 그 밖 교육청 2~3개

### ② 광역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한 지휘·관리체계 정비

통합으로 인해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광역 교육행정체제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 수요의 다양성과 정책 설계 및 집행의 복잡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준에 준하는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간 양 교육청별로 각각 운영했던 정책·자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을 신설한다. 이로써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조정실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되며, 종합적인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 직무등급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6월 초)

### ③ 통합업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관리직 정원 기준 확대

통합업무 전문성 제고 및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기존 4급 상당 과장·담당관 외에 3급 상당 과장·담당관, 그 밑에 두는 4급 관리직 정원도 보강한다. 서울 수준의 3급 상당 과장·담당관(3명) 및 별도의 4급 정원(6명)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행정체제통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상당 과장·담당관(2명)과 그 밑에 두는 4급(4명) 정원을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확대한다. 이에 통합특별시교육청은 3급 상당 과장·담당관 5명<sup>한시2명</sup>과 별도의 4급 정원 10명<sup>한시4명</sup>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5월 29일(금)부터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 시점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서울에 준하는 강력한 위상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포괄하는 교육정책을 자율적·혁신적으로 설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형(모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책임자	부단장 지혜진 (044-203-7176)
		담당자	팀장 성미정 (044-203-7196)
			사무관 백민진 (044-203-6283)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장 정원숙 (044-203-6062)
		담당자	사무관 전주현 (044-203-6053)
			주무관 이윤범 (044-203-6064)
담당 부서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육자치협력과	책임자	과장 김진형 (044-203-6340)
		담당자	사무관 최경은 (044-203-6348)
			주무관 황아영 (044-203-6349)

**붙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청 실·국의 설치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1.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3실·국 이상 5실·국 이하
2. 경기도 교육청	4실·국 이상 6실·국 이하
3. 그 밖의 교육청	2실·국 이상 3실·국 이하

비고

1. 실·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수를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위 표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2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교육감	실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그 밖의 시·도 교육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	

비고

1.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1명의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으며, 과·담당관 단위의 기획업무 기구의 장 밑에는 1명(경기도 교육청은 2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1의2.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은 교육행정체제통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과장·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체제통합 지원 업무 기구의 장 밑에는 4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의 과장·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위표의 과장·담당관 밑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4명 이내
  - 나. 경기도 교육청: 5명 이내
  - 다. 그 밖의 시·도 교육청: 2명 이내
4.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하 “감사기구”라 한다)는 과·담당관으로 두고, 그 밑에는 1명(경기도 교육청은 2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5. 제4호 및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은 3급 상당 개방형 직위로, 그 밖의 시·도 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p> <p>2. ~ 9.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p> <p>2. ~ 9. (현행과 같음)</p>